

『2021년 경기도 나노 중소기업 지원 사업』 상반기 참여기업 모집 공고

『2021년 경기도 나노 중소기업 지원 사업』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,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1년 4월 1일

경기도지사
한국나노기술원장

1.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공정품질 기술개발 및 신뢰성 인증·분석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기업의 기술경쟁력강화
- 사업기간 : 6개월 내외 (4월~10월)
- 지원대상 : 도내 나노분야 및 시스템반도체 관련 중소·창업 기업
- 지원규모 : 상반기 13개사 내외
 - (지원금) 기업구분(일반/창업)에 따라 매칭

| 구분 | 지원금(과제별) | 기업부담금(과제별) | 합계 | 모집수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
| 일반기업 | 최대 24,000천원 | 6,000천원 이상 (현금 50%+현물 50%) | 30,000천원 이내 | 7개 내외 |
| 창업기업 | 최대 27,000천원 | 4,000천원 이상 (현금 50%+현물 50%) | 31,000천원 이내 | 6개 내외 |

※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, 부가가치세(VAT) 지원은 제외

2. 신청자격

일반기업 :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

※ 사업자등록증(본사 또는 사업장), 공장등록증명서,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기준

창업기업 : K-스타트업 정회원 승인을 받은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 (주민등록지)인 예비창업자

※ (필수요건) 선정 시 ‘한국나노기술원 1인 창조 지원센터’ 입주 필수

※ (예비창업자) 협약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

[참고]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

- ①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
(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)
 - ② 사업규모 확대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않아도 상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 자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으로 인정
- * 관련법령: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

2. 사업내용 및 추진절차

사업내용

- (지원내용) 중소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및 시험분석인증, 기술교류, 입주 연구실 등을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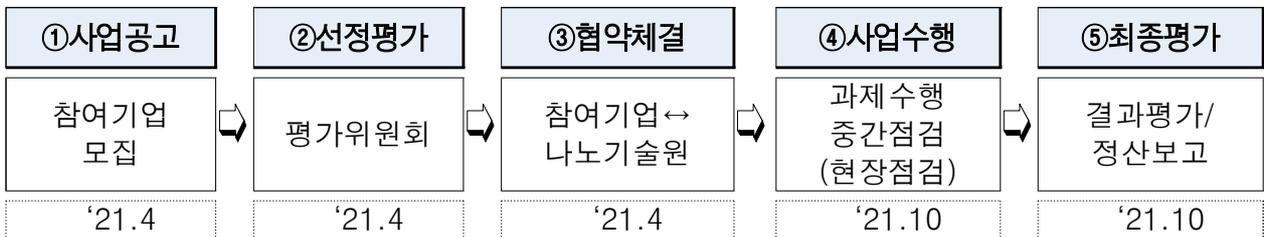
[지원세부내역]

| 공정품질 기술개발 | |
|-------------|--|
| ① 요소(부분) 기술 | · 기존 제품이나 기술에 소규모 투자만으로 생산비 저감, 속도증대 등으로 시장에서 바로 이익창출이 가능한 기술 * 예시 : 수율 및 효율증대, 장비의 재현성(reproducibility) 확보 등 |
| ② 공정개선 | ·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* 예시 : (종전) ㉠→㉡→㉢→㉣ 단계 ⇨ (개선) ㉠→㉡→㉢ 단계 |
| ③ 제품개선 | ·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,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|

| 신뢰성 인증 및 시험분석 | |
|---------------|---|
| ④ 신뢰성시험 | · 신뢰성시험, 물리시험, 전기적 스트레스시험 등 |
| ⑤ 시험분석 | · 물성구조분석 : 전자현미경 분석(SEM, TEM, FIB, RAMAN, EDS), X-ray/표면 분석(XRD, XRF, AFM), 화학분석(FT-IR) 등 · 전기·광학적 특성 및 불량분석 등 |

- (사업비 구성) 장비이용료, 신뢰성 인증/분석, 연구재료비 지원 및 총 사업비 내 자율구성

□ 추진절차



※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·변경될 수 있음

3.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1. 4. 1.(목) ~ 2021. 4. 20.(화)
- 신청서류 : [별첨] 참여신청서 등 제출서류 각 1부
- 신청방법 : 신청서류 E-mail 제출 (jisun.kim@kanc.re.kr)
- 문 의 처 : 한국나노기술원 기업지원실

| 담당업무 | 담당자 | 연락처 | E-mail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문의 | 김지선 연구원 | 031-546-6532 | jisun.kim@kanc.re.kr |
| | 이윤혜 연구원 | 031-546-6243 | |
|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문의 | 최유라 연구원 | 031-546-6241 | |

4. 선정방법

-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점수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 평균 70점 이상 득한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(70점미만 시 탈락)
- 평가 결과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한국나노기술원 홈페이지 공지 및 이메일로 개별통보 되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음
- **평가방법** : 참여신청서 서면평가 및 대면(또는 비대면) 발표평가

※ 세부사항 추후 공지 및 개별 안내

□ 평가항목 및 세부내용

○ 평가항목

| 구분 | 평가지표 | 배점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추진계획 및 적정성 (30) | ◦ 추진계획(또는 입주계획) 적정성 및 목표수준 등의 구체성 | 10 |
| | ◦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사업계획의 명확성 | 10 |
| | ◦ 한국나노기술원과의 연계(나노랩 활용 등) 가능성 | 10 |
| 기술성 (30) | ◦ 기술의 우수성 및 기술구현의 현실성 | 10 |
| | ◦ 개발 기술의 타기술(경쟁자) 대비 독창성·차별성 | 10 |
| | ◦ 기술 보유 현황(인증, 특허 등) 및 획득 가능성 | 10 |
| 시장성 및 창출효과 (40) | ◦ 개발 기술의 사업성 및 시장진출 파급효과 | 10 |
| | ◦ 기술 개발을 통한 매출 및 고용효과 | 10 |
| | ◦ 수출가능성 | 10 |
| | ◦ 수요고객 연계 및 투자가능성 | 10 |
| 합 계 | | 100 |

○ 우대사항(가점)

| 적용구분 | 세부내용 | 배점 |
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
| 일반/창업 | ◦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| 3점 |
| 창업기업만 해당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만 39세 미만 청년(예비)1인 창조기업 ◦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◦ 최근 2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* 지방청 및 행안부 주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포함 ◦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또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추천기업 ◦ 재기 1인 창조기업(폐업 사실 확인서 확인) | 각1점 (최대3점) |

5. 기타사항

□ 이행보증보험 가입

- 지원금은 선정기업의 지원금 전용통장으로 선 지급 되며, 협약 전 이행(지급) 보증보험증권(기업 자부담 발급)을 제출해야 함 (가입이 불가능한 경우, 지원 대상에서 제외)

□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관련

-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1년 단위 입주협약 체결 (창업활동이 우수한 입주자는 심사를 통해 연장가능 - 최대 2년)
- 단, 타 센터에 입주한 이력이 있을 경우 전체 입주기간이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
- 전담매니저의 상시상담 및 성과관리를 통한 기업별 맞춤형 기술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(교육, 멘토링, 분야별 네트워킹 등) 지원

□ 지원제외대상 ※ 선정·협약 이후에도 지원제외 사항 확인 시 지원제외 및 협약무효
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- 휴·폐업중인 기업
-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
 - 가. 부도기업
 - 나. 법정관리, 화의기업(단,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)
 - 다. 자본전액잠식 또는 부채비율 1000% 이상인 중소(견)기업
 - 라. 개인회생·파산·면책권자(참여기업 대표, 과제책임자 등)
 - 마.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‘의견거절’ 또는 ‘부적정’ 인 중소(견)기업
 - 바.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(견)기업

-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및 공고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기업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-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기관, 대표 및 과제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지원받은 기업 또는 이미 완료된 과제를 신청한 기업

주의사항

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

- ①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배제
- ②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 시)
- ③ 경기도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